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6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2.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인력을 보장하여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를 1,184명 → 1,201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1,155명 → 1,172명(증 17)
 -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9명 (변동없음)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 총 계 : 1,184명 → 1,201명(증 17)
 - 일반직 계 : 1,177명 → 1,194명(증 17)
 - 6급 이하 계 : 1,113명 → 1,130명(증 17)
- ※ 동 주민자치 전담인력 9명, 동 복지인력 8명

총 계	현 행				구분	개 정 안					
	집행기관			의회 사무 기구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 기구	증감
	본청	보건소	동				본청	보건소	동		
1,184	1,155			29	총 계	1,201	1,172			29	증17
1	1				정 무 직	1	1				
1,177	1,150			27	일 반 직 계	1,194	1,167			27	증17
1	1				3급	1	1				
8	6	1		1	4급	8	6	1		1	
53	32	9	10	2	5급	53	32	9	10	2	
1,113	1,089			24	6급 이하	1,130	1,106			24	증17
2	2				전문경력관	2	2				-
6	4			2	별정직 계	6	4			2	-
1	1				5급 상당	1	1				-
5	3			2	6급 상당 이하	5	3			2	-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추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제출되었음.
- 동 주민자치 전담인력 9명과 동 복지인력 8명, 총 17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은 1,184명 → 1,201명으로, 일반직은 1,177명 → 1,194명, 6급이하는 1,113명 → 1,130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정원책정기준은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적합함.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정무
책 정 기 준	100%	99%	1%이내
개정 후 정원	1,201명	1,194명	7명
개정 후 비율	적합	99.4%	0.6%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한 주민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안전임을 검토 보고 드림

붙임 1. 관계 법령 1부.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행정안전부 자치구 기준인건비(배정인력) 현황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

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u> <u>정원조례</u>		<u>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u> <u>조례</u>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u>1,184명</u> 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201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u>1,155명</u> 2. (생략)		1. ----- <u>1,172명</u> 2.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 (제4조 관련)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보건소	동	
총 계	<u>1,184</u>	<u>1,155</u>			29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77</u>	<u>1,150</u>			27
3급	1	1			
4급	8	6	1		1
5급	53	32	9	10	2
6급 이하	<u>1,113</u>	<u>1,089</u>			24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4			2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3			2
총 계	<u>1,201</u>	<u>1,172</u>			29
정 무 직	1	1			
일반직 계	<u>1,194</u>	<u>1,167</u>			27
3급	1	1			
4급	8	6	1		1
5급	53	32	9	10	2
6급 이하	<u>1,130</u>	<u>1,106</u>			24
전문경력관	2	2			
별정직 계	6	4			2
5급 상당	1	1			
6급 상당 이하	5	3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직급별 상계 조정에 따른 인건비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직급별 비율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따름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정무 별정
책정기준	1%이내	6%이내	21%이내	31%이내	30%이내	10%이상	1%이내	1%이내
개정 후 비율	0.75%	4.41%	19.40%	30.22%	28.98%	15.49%	0.17%	0.58%

- 인건비 기준액

구분	호봉 기준	22년 기준액	증원
8급	4호봉	3,473천 원/월	9명
9급	1호봉	3,044천 원/월	8명

※ ① 기본급+②고정수당(정액급식비,대민활동비,명절휴가비,정근수당,직급보조비)+③추가수당(가족수당,시간외수당,연차수당,특수근무수당)+④복지포인트

- 임금인상율 : 연1.9%적용(최근 5년 평균)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인건비		667,308	679,987	692,907	706,072	719,487
소계		667,308	679,987	692,907	706,072	719,487	3,465,76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구비	자체재원	667,308	679,987	692,907	706,072	719,487	3,465,760
	의존재원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667,308	679,987	692,907	706,072	719,487	3,465,760

5. 작성자 : 행정지원과 인사팀 임수애 (2627-1012)

붙임 4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관련 자치구 기준인건비 현황 (2017년~2021년 배정인력)**

(단위 : 명)

연번	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기준인력 반영 현황		비고
			정원조례 반영	채용	
1	금천구	36	19	19	인건비 부담 최소화 및 행정수요 변화 고려 순차적 증원 추진 [1차] 19명 증원 <'20.12.31.자 정원조례 개정 완료> [2차] 17명 증원 <'22년 10월 정원조례 개정 추진중>
2	종로구	30	18	18	
3	중구	67	41	41	
4	용산구	59	68	67	
5	성동구	47	29	29	
6	광진구	48	48	48	
7	동대문구	32	31	31	
8	중랑구	79	90	90	
9	성북구	84	84	84	
10	강북구	38	27	27	
11	도봉구	70	57	40	
12	노원구	86	70	70	
13	은평구	52	52	52	
14	서대문구	46	46	46	
15	마포구	48	48	48	
16	양천구	79	79	74	
17	강서구	51	48	23	
18	구로구	47	45	39	
19	영등포구	37	37	37	
20	동작구	51	35	35	
21	관악구	55	55	45	
22	서초구	91	67	77	
23	강남구	141	139	139	
24	송파구	159	162	162	
25	강동구	56	74	51	

※ 기준인건비 배정인력은 자치구별 주민수, 기초생활수급자수 등을 종합, 행정안전부 자체 기준에 따라 적정 규모 산출